

석면해체·제거작업장 안내판(제37조 관련)

1. 양식

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: 석면해체·제거업체명: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종류: 석면해체·제거 면적: 작업기간: 0000년 00월 00일 ~ 0000년 00월 00일(00일간) (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: 0000년 00월 00일, 000000고용노동청) 석면해체작업감리인(지정 대상인 경우만): (연락처: 000-000-0000) ※ 이 안내판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,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00특별자치시·00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석면해체·제거업체명(대표자명) 연락처 : 000-000-0000
--

※ 작업장 위치: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

※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종류: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

2. 규격

규 격

300cm^2 (가로×세로) 이상

$(0.25 \times \text{세로}) \leq \text{가로} \leq (4 \times \text{세로})$